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전병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3033
----------	------

발 의 년 월 일 : 2022년 01월 19일
발 의 자 : 전병주, 오한아 의원(2명)
찬 성 자 : 권영희, 김생환, 박순규,
송아량, 여 명, 오현정,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홍성룡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인성교육진흥법」 및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여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인성교육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라. 인성교육진흥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11조)
- 마. 교원연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기타 사항 있을시 기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들이 미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있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시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실천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5.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 제 12조에 따라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성교육 진흥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정책국장, 인성교육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 교육 담당 부서의 장학관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교원연수) 교육감은 인성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번호

2022010400000002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전병주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채소영 주무관

접수일 : 2022.01.04

회신일 : 2022.01.14

내용문의 : 02-2180-7953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안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에 따라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제12조(교원연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2022 서울인성교육 시행 계획」(2021.11)에 따라 기 추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비용추계 제외
 - ※ 단, 현재의 시행계획보다 인성교육 및 교원연수 프로그램 확대시에는 추가비용 발생 가능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23,400천원(연평균 4,6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23,400천원으로 연평균 4,68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안 제6조(협의회의 구성)에 따라(7~9명) 서울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위원이 9명인 것으로 하되 이 중 위촉직 위원은 6명으로 함.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추계함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23,400천원(연평균 4,680천원)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 계
세입	-	-	-	-	-	-	-
	소계 (a)	-	-	-	-	-	-
세출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비 (안제5조)	4,680	4,680	4,680	4,680	4,680	23,400
	소계 (b)	4,680	4,680	4,680	4,680	4,680	23,400
총비용 (b-a)		4,680	4,680	4,680	4,680	4,680	23,400

○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비 ≙ 23,400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협의회운영비)_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

- 연간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운영비 ≙ 연간 협의회 참석수당 + 연간 협의회
업무추진 경비
≙ 3,600천원 + 1,080천원
≙ 4,680천원

· 연간 협의회 참석수당 = 위촉직 위원 수 × 1인당 회의참석 수당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6명 × 150,000원 × 4회
= 3,600천원

※ 참석수당 지급기준은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기본료 10만원, 2시간 초과 비용 5만원 등 총15만원 기준임

· 연간 위원회 업무추진 경비 = 전체 위원 수 × 1인당 업무추진비 단가 × 1년간 회의개최 횟수
= 9명 × 30,000원 × 4회
= 1,080천원

※ 1인당 업무추진경비 단가는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3만원으로 가정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당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주무관 채소영

☎ 02-2180-7953

e-mail : liz1998@seoul.go.kr